

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변경·확정으로 기존의 양포동사무소가 제4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4단지 내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·이전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양포동사무소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)

<예정부지 매입>

- 추정가액 : 344,000천원(공단 조성원가)
- 대상토지 : 구미시 옥계동 4단지 내 2,361㎡ (714평)

<청사건물 신축>

- 추정가액 : 1,600,000천원
- 규 모 : 연건평 990㎡(300평), 지하1층 지상2층
(형곡2동사무소 규모)

3. 법적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, 제101조
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1항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, 제38조 및 제46조 ~48조

200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에 의결한다.

2002. 11. 21.
구미시의회 의장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2002년도 취득(교환)대상자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취득대상토지

□ 제한의 표시

○ 예정부지 매입

- ▶ 구미시 옥계동 4단지 내 (분양지번 : 구미4단지 033-13-002)

지목 : 대지 면적 : 2,361㎡

○ 청사건물 신축

- ▶ 구미시 옥계동 4단지 내 연건평 : 990㎡

□ 위치도

